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목 차>

1.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표준형> p.1
2.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표준형> p.16
3.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표준형> p.25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표준형> p.34
5.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간이형> p.51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성 자	이름	*붙임 참조
	담당부서 (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급	*붙임 참조
	국장	김규석		연락처	*붙임 참조
	과장	손필훈		이메일	*붙임 참조

※ 붙임 : 규제사무별 작성자

1.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표준형>

이름	김상중, 허두기
직급	5급, 6급
연락처	044-202-8851, 8854
이메일	true486@korea.kr, gjenrl@korea.kr

2.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표준형>

이름	류상훈, 임세종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93, 8942
이메일	nextism2@korea.kr, osamalim@korea.kr

3.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표준형>

이름	윤병민, 김병석
직급	5급, 6급
연락처	044-202-8936, 8939
이메일	rollingpanda@korea.kr, kbs0818@korea.kr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표준형>

이름	원치욱, 최선미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922, 8928
이메일	chiuk91@korea.kr, mimi17@korea.kr

5.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간이형>

이름	배승렬, 김범순
직급	5급, 7급
연락처	044-202-8816, 8817
이메일	kindoffi2@korea.kr, kbszz21@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2.규제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3조의2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8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7 ~ 2021.09.27. (41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도급인이 혼재작업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조정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 규정 필요 ○ 사업장 내 작업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함			
	7.규제내용	○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사업장 내에 하나 이상의 관계수급인을 보유한 도급인 사업주 ○ 도급인,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인의 혼재작업 재해 예방 의무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21,974.6	-21,974.6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0	21,974.6	-531.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3조의2(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대상) 법 제6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6.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8.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또는 하나 이상의 관계수급인 등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이에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조정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화재·폭발의 위험 외 기계·설비 정비작업 시 기계·설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 작업의 혼재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 양태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행령에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12년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감소세를 유도하고 있으나
 -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중 혼재작업에 의한 재해 건수와 재해 비율을 산정한 결과, '16년 이후 혼재작업으로 인한 재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산재 사고사망자수 : '16년 969명 → '17년 964명 → '18년 971명 → '19년 855명 → '20년 882명
 - * 혼재작업사망자수 : '16년 77명(7.9%) → '17년 66명(6.8%) → '18년 72명(7.4%) → '19년 85명(9.9%) → '20년 126(14.3%)
-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월) 등과 같이 건설업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도장·용접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 제조업 등에서 비정형 작업(기계 정비·청소 등) 중 기계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끼임사고 등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8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없음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내용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확대
	내용	전산업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인 사업장에 혼재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 도입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범위 규정이 없음
규제대안1	혼재작업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인 및 조정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확립으로 체계적인 재해 예방 기틀 마련	혼재작업 예방을 위한 도급인 안전보건 확인 및 조정 의무 추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하나 이상의 관계수급인 간의 혼재 작업 예방 조치로 인한 공사기간, 제조시간 등의 공기 증가 우려
규제대안2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인 사업장(전산업분야)에서의 안전보건 감시 시스템 확립 혼재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자 역할 및 사업장 내의 기타 재해 예방에 기여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혼재 작업에 대한 사각지대로 남음 안전보건조정자 채용 및 기타 부수적인 규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설업 대형건설사 (2021.08.10.)	작업장 내의 혼재 작업 재해 빈도와 사례 등이 매우 많으므로, 혼재작업에 대한 예방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방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혼재작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재해유형의 구체적인 분류 안을 구성하고, 명확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하여 의견 수용
건설업 대형건설사 (2021.08.10.)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여, 혼재작업이 예방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음 그러나, 도급인의 의무보다 발주자의 공기 조율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혼재작업 관련 규제가 더해져야 함	
건설업 중소건설사 (2021.08.10.)	명확한 혼재작업의 정의, 범위가 필요 기준에 규정된 재해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칭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함	
제조업 화공·플랜트 (2021.08.10.)	전산업 분야의 혼재작업 예방 차원에서 필수적인 정책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혼재작업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제조업 일반제조 (2021.08.11.)	넓은 규모의 사업장을 가진 도급인은 공간의 각기 다른 작업의 공간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수많은 공정과 장치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내에서 자체적인 제도를 활용 중 혼재작업 장소와 종류를 명확히 나타내고, 구체적인 혼재작업 사례 등의 정보를 준다면, 충분히 이행 가능	
제조업 해양조선 (2021.08.11.)	이미 일정정도 규모이상의 기업에서는 혼재작업에 관련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강화 기준 및 자체 기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 또한 가지고 있음 추가적으로 혼재작업 관련된 사례 홍보 및 구체적인 재해 유형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이 시행령에 없게 되어, 도급인이 혼재작업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조정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호, 제8호에 대한 의무 사항 이행이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규제대안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을 시행령에서 체계화한다면, 혼재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작업자의 위험과 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혼재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추가적인 의무 부여와 하나 혼재작업 예방 조치로 인한 공사기간, 제조시간 등의 공기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음
 - 혼재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 강화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공기에 대한 발주자의 적정공기 산정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 규제대안 2는 기존의 건설업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전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혼재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자 역할 및 사업장 내 기타 재해 경감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인 사업장으로 확대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여전히 혼재작업에 대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고, 안전보건조정자 채용 및 기타 부수적인 규제 비용에 대한 전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즉, 추가적인 비용적 부담과 여전히 존재하는 혼재작업 재해 예방에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규제대안 2보다, 규제대안 1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 등의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 목표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년 4월) 등과 같이 건설업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도장, 단열재 도포, 용접·용단 작업 등의 작업 혼재 예방
 - 제조업 등에서 비정형 작업(기계 정비·청소 등) 중 기계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의 작업 혼재 예방
- 도급인의 혼재작업 재해 예방 의무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한 개 이상의 관계수급인이 함께 공정·공종 등의 작업 중 혼재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도급인이 확인과 조정 의무를 강화
 - 혼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관계수급인 또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으로 제도적 보호 체계 확립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호, 제8호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함
- 도급인의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중심으로 정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도급인에 대한 위험작업 조정의무 부여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이나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영국, 독일, 일본 등 타 선진국에서도 도급인에게 다양한 위험요인이 혼재할 경우 이를 통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일몰설정 여부

재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필수적으로 존속하여 지속적인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여 일몰설정은 합리적이지 못함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사업장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8개 위험으로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영국, 독일, 일본 등 타 선진국에서도 사업장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혼재할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이를 통제하도록 의무를 부여

구분	내용	인증기관	비고
영국	<u>여러가지 작업 관련 항목 또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이루어지게 될 작업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u> 설계, 기술 및 조직 관련 사항이 결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u>원설계자 또는 도급자가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u> 건설단계 동안 보건안전 관련 문제를 조정해야 함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건설설계규정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 CDMR 2015]
독일	1) <u>여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u> 해당업체들의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u>상호협력</u> 해야 함	독일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1)-a <u>복수의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들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u> , 사업주들(및 개인사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8조 1항에 따라 피보험자 안전 및 보건 사항에 관해 협조해야 함 1)-b <u>특히 다양한 당사자들이 서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 업무를 조율할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특수 위험 요인을 피하기 위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법정재해 보험기구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사고예방규정 (제2장, 제6조)
일본	(제15조) 1)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을 행할 때는 <u>근로자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행함으로써 일어나는 노동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u> <u>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고 동시에 제 30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총괄</u> 해야 함 (제 30조) 1) 특정원청사업자는 <u>그 근로자 및 관계도급인의 근로자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여 발생하는 노동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u> 다음 사항에 관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2011)
노르웨이	1) <u>한 개의 지역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u> a. 공동활동과 공동작업지역의 공동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하여 마련해야 함 b. 총괄추진자는 작업환경법 제15조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10인이상의 근로자가 두 개이상의 사업장들이 혼재 작업하고 있는 곳을 위임 받아 관리함 c.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장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아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노르웨이 정부	사업자의 체계적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 타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17년 개정) : 혼재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도입

- 안전보건조정자란 둘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간의 안전보건업무를 조정 ·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혼재작업 파악/산업재해발생 위험성 파악/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조정 등)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시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가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 4,394.92백만,
간접편익 17,579.68백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394.92	-4,394.92
	간접		17,579.68	-17,579.68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1,974.6	-21,974.6
기업순비용		-4,394.92	연간균등순비용	-531.5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서 정해진 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이미 2021년 4월 29일부로 추가되어 있으며, 본 규제는 사업장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규제자인 도급인이 해당 사업장내의 관계수급인들에게 혼재작업 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조정하는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법을 준수하여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 규제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분된 작업 시 혼재로 인한 위험 항목에 대해, 확인 및 조정의 의무를 도급인이 수행 할 수 있음. 더하여, 채용 또는 설비 설치, 매출감소 등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히 피규제자가 본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

○ 규제 차등화 방안

도급인의 혼재작업 조정의무 규정을 차등화할 경우 화재·폭발 등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 점검·감독 등 산재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은 기조느이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집행·운영하는 인력과 장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 중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 분석을 통해 작업 조정이 필요한 위험요소 파악

2. 향후 평가계획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의 혼재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혼재작업 재해 예방 효과성 분석

3. 종합결론

- 기존의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제7호, 제8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항목에 대한 본 규제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혼재작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험의 여지가 있는 명확한 장소를 제공하여 확인 및 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고, 사회적 간접편익이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되어 순비용이 극대화됨. 추가적으로 피규제자의 사업장 내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소통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혼재작업 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394.92	-4,394.92
	간접		17,579.68	-17,579.68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1,974.6	-21,974.6
기업순비용		-4,394.92	연간균등순비용	-531.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

(정량)세분류	도급 사업주
활동제목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 시 작업 조정
편익항목	산재 사망사고로 지불하여야 할 산재보상금
금액	4,394,920,76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감소된 산재 사망자수X사망근로자 1인 평균 보상액 (4.3*140,611,371)
근거설명	○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 시 작업조정 의무 부과를 통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 목표는 5%로 설정할 경우 매년 혼재작업 사망자 감소 비율은 4.3명으로 예상 ○ 통계청의 2019년 산재보험급여 지급 관련 자료에서 2019년 사망한 근로자 1인에 대한 평균보상금액 140,611,371원 ○ 따라서, 동 규제의 적용으로 매년 4.3명의 산재사망자가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4.3명×140,611,371원=604,628,895원임

☐ 간접편익 :

(정량)세분류	도급 사업주
활동제목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 시 작업 조정
편익항목	산재 사망사고 감소로 인한 간접 편익
금액	17,579,683,06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직접 편익X4(4.3*140,611,371*4)
근거설명	○ 산재 사망자 1명 발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산재 보상금)의 4배임(하인리히 산업재해 손실비용)

	○ 매년 4.3명의 산재 사망자 감소 시 간접비용에 대한 편익은 $4.3\text{명} \times 140,611,371\text{원} \times 4 = 2,418,515,581\text{원}$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												
	2.규제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5조의2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7 ~ 2021.09.27. (41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의 일환인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의 품질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각 대장의 적정성을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규정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 법에서 정한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자격 규정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이해관계자</td><td>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td><td>약 14,134개소</td></tr><tr><td>이해관계자</td><td>안전보건전문가</td><td>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사 이상 경력자</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	약 14,134개소	이해관계자	안전보건전문가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사 이상 경력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	약 14,134개소												
이해관계자	안전보건전문가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사 이상 경력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안전보건대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양질의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산재예방 효과 증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요내용	해당 규제는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자격규정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 정량적인 추산이 불가능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 용	편 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시하는 산재예방조치의 일환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품질강화를 위해 해당 대장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가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 이에 시행령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명확히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관련 고시 전문가 자격 활용
	내용	기존 고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동일하게 활용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규제대안2	대안명	기존 전문가보다 강화된 자격 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분야) 및 기술사 자격을 전문가 자격으로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사회 통념상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격으로 통용되어 혼란 방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문헌분석,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규정한 내용으로 자격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음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도입 방안(2017, 한국안전학회)	해당없음
규제대안2	가장 상위 자격자를 전문가로 규정하여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	건설공사발주자의 비용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학계 전문가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관리 시 조 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검토	연구용역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17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17년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하여 자격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으며
 - 이를 관련 고시*에 명문화하여 '20.1.16부터 운영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자격자가 동 제도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로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상황으로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 대안1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한 작성을 도모하고 건설공사 재해예방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제도의 목적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품질 강화를 위해 상 위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 또는 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한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 전문가의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통해 산 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설정은 부적정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영국의 CDM제도

○ 타법사례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관련 고시 전문가 자격 활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관련 고시 전문가 자격 활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제도에서도 산재예방 조치능력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동일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전문가의 자격을 동일하게 하여 상위 규정으로 정하는 해당 내용도 시장에서 충분히 준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노동고용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각종 건설현장 지도 감독 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재정적 집행은 충분히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전문가의 자격기준 마련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도입 방안(2017, 한국안전학회)

- 현재도 동일한 기준의 자격자를 해당 전문가로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건설현장 감독 시 해당 제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

3. 종합결론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하는 등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하며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검토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해당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과거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고시에 규정한 전문가의 자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이미 시장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통용되는 해당 자격을 시행령으로 상향할 경우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관련 고시 전문가 자격 활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해당 규제는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자격규정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 정량적인 추산이 불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관련 고시 전문가 자격 활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건설공사발주자
활동제목	전문가의 자격 규정
비용항목	전문가의 자격 규정에 따른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해당 제도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격규정에 따른 별도 비용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									
	2.규제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1항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8.17 ~ 2021.09.27. (41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높이 6미터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높이 5미터 이상)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이 상이하여 높이 5미터 이상 6미터 미만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확인 결과 붕괴 위험시 설계변경 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7.규제내용	산안법상 설계변경 요청대상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과 동일하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 변경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높이 5미터 이상 높이 6미터 미만 거푸집 동바리 사용 건설사업주</td><td>추정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높이 5미터 이상 높이 6미터 미만 거푸집 동바리 사용 건설사업주	추정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높이 5미터 이상 높이 6미터 미만 거푸집 동바리 사용 건설사업주	추정불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을 통일하여 설계변경 요청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규제의 지속성이 필요한 대상으로 일물설정대상 아님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4. (생략)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4.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8조는 건설공사도급인은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건설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규정
-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1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2)은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의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 관계 전문가(직무분야 기술사)의 구조계산 검토 결과가 적정임을 확인 (부적정 등의 사유 발생시 설계변경을 통해 재구조검토)
 - 산안법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대상(6미터 이상)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5미터 이상)이 상이함
- ☐ 따라서, 높이 5미터 이상 6미터 미만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확인 결과 붕괴 위험시 설계변경 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높이 6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만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으로 적용
규제대안1	대안명	5미터까지 확인대상 확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과 동일한 기준인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으로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거푸집 동바리를 확인대상으로 확대

	내용	높이와 관계없이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으로 적용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건설기술진흥법과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피규제자의 혼란 야기
규제대안1	건설기술진흥법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변경하여 피규제자의 혼란 해소	해당 없음
규제대안2	안전성 강화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설업계 관계자	해당 제도 개선은 건설업계 관계자의 규제 개선을 요청으로 하는 것임	개정 중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건설업계 관계자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건설기술진흥법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피규제자의 혼란을 해소

3. 규제목표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을 통일하여 설계변경 요청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합리적 해결책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계속 유지해야하는 규제에 해당하여 일몰설정 대상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5미터까지 확인대상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5미터까지 확인대상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사항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지킴이 포함)을 통해 지도점검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이미 충분히 검토된 건설기술진흥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2. 향후 평가계획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점검 등 현장 방문시 확인하겠음

3. 종합결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대상(6미터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5미터 이상)이 그 기
준이 서로 상이하여 피규제자의 혼란을 야기하여 해소가 필요하는데
반해 추가로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선(기
준 통일)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5미터까지 확인대상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5미터까지 확인대상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건설공사 사업주
활동제목	구조검토 대상(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확대
비용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이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5미터 이상 거푸집 또는 동바리에 대해 구조검토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신설									
	2.규제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7 ~ 2021.09.27. (41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이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4종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 신설 - ①방문판매원, ②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 설치 및 수 리원, ④화물차주(4종)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td><td>3,438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3,438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3,438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산업재해를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1,457.66		11,457.66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1,457.66	0	1,448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9종, 이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은 5종*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자(27종),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 기사, ⑦대출 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 기사
↳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밑줄 표시

-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직종별 업무위험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을 정할 필요

* ①방문판매원, ②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④화물차주(4종), ⑤소프트웨어 기술자

□ 개정안 주요 내용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4종*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 신설

* ①방문판매원, ②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④화물차주(4종)

- (교육시간·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별표 4, 5에 규정

- (교육시간) ①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면제), ②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교육 16시간 이상(단기·간헐적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내용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4개 사항, 특별교육의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같은 내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교육대상으로 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중 업무위험성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을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교육대상으로 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전부를 안전·보건 교육대상으로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중 업무위험성이 높은 4개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백 발생
규제대안2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수준 향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대상 교육의무를 제외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의무를 규정하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간 교육 적용에 불평등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업무위험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에 따른 작업환경 특성,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업무 투입 전 알 필요가 있으므로, 최초 노무 제공 시 및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을 교육받도록 한 것은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직종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피규제자에게 혼돈을 초래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	법률에 의해 5개 직종이 특저오디어 있어 새롭게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피규제자에게 혼돈을 초래
네거티브 리스트	-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	교육대상을 사후에 확정할 경우 피규제자에게 혼돈을 초래
규제 샌드박스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교육대상으로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1,457.66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교육대상으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457.66		11,457.6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457.66		11,457.66
기업준비용	11,457.66	연간균등준비용	1,448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고 이 중 일부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규제에 대한 준수 가능성은 큼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 대상이 아님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종사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연구 수행('20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5개 직종)에 대해 설문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인자 파악,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도출

2. 향후 평가계획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3. 종합결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의 경우 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중 위험도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을 규정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교육대상으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457.66		11,457.6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457.66		11,457.66
기업순비용		11,457.66	연간균등순비용	1,448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교육대상으로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활동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11,457,665,034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직종별교육 실시인원* X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안전·보건교육 의무 규제준수비용) + (특별교육) (직종별교육 실시인원* X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안전·보건교육 의무 규제준수비용)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방문판매원] (73,315 X 9,857) + [대여제품점검원] (24,619 X 8,817) + [가전제품설치원] (2,671 X 16,610) + (특별교육) [화물차주] (19,673 X 158,696) = 722,631,570 + 217,063,729 + 44,366,286 + 463,944,621 = 1,448,006,207 (원)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피규제대상 규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움.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직종별로 산재보험 가입률 차이가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낼 수 없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추산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 의무는 산재보험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직종별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임. 그러나 추가되는 직종의 경우 높은 산재보험 가입률(62%) 및 제도 초기 도입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가입 특고 종사자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산재보험 적용 현황(21.5월말 기준) >

구분	소계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록 종사자(명)	120,278	73,315	24,619	2,671	19,673
적용제외 종사자(명, %)	46,661 38.79	35,738 48.75	1,081 4.39	131 4.90	9,711 49.36
실적용 종사자(명, %)	73,617 61.21	37,577 51.25	23,538 95.61	2,540 95.10	9,962 50.64
가입 사업장수(개소)	3,438	2,075	12	147	1,204

- (피규제대상 전체 규모) =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장 수(3,438 개소)로 추정

※ 직종별 피규제대상 사업장 수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 가능

- 지난 1년간 산재보험 가입률은 61%임. 4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61%정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음
- 다만, 교육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한 개의 주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므로 교육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 현황으로 직종별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은 기존계약자가 아닌 신규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수보다 대상자 수가 작을 것으로 판단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특고로 등록된 종사자는 총 120,278명이며 직종별 종사자수는 각 직종별 등록종사자수로 추정 가능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별 종사자수 : 120,278명

※ 방문판매원 : 73,315명

※ 대여제품 점검원: 24,619명

※ 가전제품 설치원: 2,671명

※ 화물차주: 19,673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평균 임금에 관한 자료(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59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 임금 개정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 직종별 시간당 임금(1일 8시간 근무 가정) ① 방문판매원: 53,250(원/일) / 8(시간/일) = 6,656(원) ② 대여제품점검원: 46,400(원/일) / 8(시간/일) = 5,800(원) ③ 가전제품설치원: 97,733(원/일) / 8(시간/일) = 12,217(원) ④ 화물차주: 143,667(원/일) / 8(시간/일) = 17,958(원) ○ <u>안전·보건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산출</u>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안전·보건교육 의무 규제 준수비용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 (1인당 직종별 위탁교육 비용 × 위탁비율) + (1인당 직종별			

집체교육 비용 X 집체비율)

= (방문 판매원) (25,040 X 14.3%) + (7,323 X 85.7%) (원)
(대여제품점검원) (22,900 X 14.3%) + (6,467 X 85.7%) (원)
(가전제품설치원) (38,943 X 14.3%) + (12,884 X 85.7%) (원)
(화물차주) (53,295 X 14.3%) + (18,625 X 85.7%) (원)

= (방문 판매원) 9,857 (원)
(대여제품점검원) 8,817 (원)
(가전제품설치원) 16,610 (원)
(화물차주) 23,583 (원)

[특별교육]

= (1인당 직종별 위탁교육 비용 X 위탁비율) + (1인당 직종별
집체교육 비용 X 집체비율)

= (방문 판매원) (109,432 X 14.3%) + (58,584 X 85.7%) (원)
(대여제품점검원) (101,300 X 14.3%) + (51,736 X 85.7%) (원)
(가전제품설치원) (162,262 X 14.3%) + (103,072 X 85.7%) (원)
(화물차주) (216,801 X 14.3%) + (149,000 X 85.7%) (원)

= (방문 판매원) 65,855 (원)
(대여제품점검원) 58,824 (원)
(가전제품설치원) 111,536 (원)
(화물차주) 158,696 (원)

※ [산식설명]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4종) 교육은 직종 특성 상 주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김태구(2018)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14.3%(위탁), 85.7%(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②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0분의 50만 적용됨. 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4종)는 이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시간의 1/2을 적용하였음.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 1시간

• (특별교육) 16시간 → 8시간

③ 특별교육은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4종) 중 화물차주만 해당

④ 특별교육 대상은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면제

① (위탁)(특별) [(교육시간 X 위탁수수료*) + 이동비용**] + [(교육시간 + 이동시간***)
X 직종별시간당임금]

* 위탁수수료: 5,400 (원/시간),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7호) 중 안전관리자 교육수수료 참고
 ** 이동비용: 3,000 (원), 지하철 이동(왕복), 지하철 1회당 1,500원 가정
 *** 이동시간: 1.5 (시간), 위탁교육장소까지의 이동시간 가정

= (방문 판매원) [(8 X 5,400) + 3,000] + [(8 + 1.5) X 6,656] (원)
 (대여제 품점검원) [(8 X 5,400) + 3,000] + [(8 + 1.5) X 5,800] (원)
 (가전제 품설치원) [(8 X 5,400) + 3,000] + [(8 + 1.5) X 12,217] (원)
 (화물차주) [(8 X 5,400) + 3,000] + [(8 + 1.5) X 17,958] (원)

= (방문 판매원) 109,432 (원)
 (대여제 품점검원) 101,300 (원)
 (가전제 품설치원) 162,262 (원)
 (화물차주) 216,801 (원)

② (위탁)(최초) [(교육시간 X 위탁수수료*) + 이동비용**] + [(교육시간 + 이동시간***)
 X 직종별시간당임금]

* 위탁수수료: 5,400 (원/시간),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7호) 중 안전관리자 교육수수료 참고
 ** 이동비용: 3,000 (원), 지하철 이동(왕복) 및 지하철 1회당 1,500원 가정
 *** 이동시간: 1.5 (시간), 위탁교육장소까지의 이동시간 가정

= (방문 판매원) [(1 X 5,400) + 3,000] + [(1 + 1.5) X 6,656] (원)
 (대여제 품점검원) [(1 X 5,400) + 3,000] + [(1 + 1.5) X 5,800] (원)
 (가전제 품설치원) [(1 X 5,400) + 3,000] + [(1 + 1.5) X 12,217] (원)
 (화물차주) [(1 X 5,400) + 3,000] + [(1 + 1.5) X 17,958] (원)

= (방문 판매원) 25,040 (원)
 (대여제 품점검원) 22,900 (원)
 (가전제 품설치원) 38,943 (원)
 (화물차주) 53,295 (원)

③ (집체)(특별) (교육시간X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강사료*) + (교육시간X
 직종별시간당임금)

* 근로자 1인당 강사료: 667 (원/시간/1인), 강사료 20,000 (원/시간) 및 1회 교육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0명 참여 가정

= (방문 판매원) (8 X 667) + (8 X 6,656) (원)
 (대여제 품점검원) (8 X 667) + (8 X 5,800) (원)
 (가전제 품설치원) (8 X 667) + (8 X 12,217) (원)
 (화물차주) (8 X 667) + (8 X 17,958) (원)

= (방문 판매원) 58,584 (원)
 (대여제 품점검원) 51,736 (원)
 (가전제 품설치원) 103,072 (원)
 (화물차주) 149,000 (원)

④ (집체)(최초) (교육시간X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강사료*) + (교육시간X
 직종별시간당임금)

* 근로자 1인당 강사료: 667 (원/시간/1인), 강사료 20,000 (원/시간) 및 1회 교육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0명 참여 가정

= (방문 판매원) (1 X 667) + (1 X 6,656) (원)
 (대여제 품점검원) (1 X 667) + (1 X 5,800) (원)
 (가전제 품설치원) (1 X 667) + (1 X 12,217) (원)
 (화물차주) (1 X 667) + (1 X 17,958) (원)

= (방문 판매원) 7,323 (원)

	(대여제품점검원) 6,467 (원) (가전제품설치원) 12,884 (원) (화물차주) 18,625 (원) [출처] 김태구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에서 위탁수수료, 강사비, 위탁-집체비율 발체 -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직종별교육실시인원* X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안전·보건교육 의무 규제준수비용) + (특별교육) (직종별교육실시인원* X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안전·보건교육 의무 규제준수비용)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방문판매원] (73,315 X 9,857) + [대여제품점검원] (24,619 X 8,817) + [가전제품설치원] (2,671 X 16,610) + (특별교육) [화물차주] (19,673 X 158,696) = 722,631,570 + 217,063,729 + 44,366,286 + 463,944,621 = 1,448,006,207 (원)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활동제 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편익항목	교육 실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절감액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재해자수 및 산재보상금을 직종별로 명확하게 추산해 내는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편익산출은 어려움												
	● 다만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재해감소율 20%를 가정*하여 재해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절감액을 산출하였음 산식: (재해자수)X(재해자당 산재보상금)X(재해감소율)												
	[단위: 명,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산재 승인된 재해자수</th><th>재해자당 산재 보상금</th></tr><tr><td>방문 판매원</td><td>115</td><td rowspan="4">47.228</td></tr><tr><td>대여제 품점검원</td><td>62</td></tr><tr><td>가전제 품설치원</td><td>31</td></tr><tr><td>화물차주</td><td>100</td></tr></table>	구분	산재 승인된 재해자수	재해자당 산재 보상금	방문 판매원	115	47.228	대여제 품점검원	62	가전제 품설치원	31	화물차주	100
구분	산재 승인된 재해자수	재해자당 산재 보상금											
방문 판매원	115	47.228											
대여제 품점검원	62												
가전제 품설치원	31												
화물차주	100												

	[산식] 308(명) × 47,228,000(원) × 0.2 = 2,909,244,800 * 산재감소율(20%) 근거: 김태구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		
	2.규제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9조의2제1항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7 ~ 2021.09.27. (41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8월, 기획재정부)과 공공재정 환수법**('20.1.1.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에 따라 – 부정수급자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1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5.18. 개정, '21.11.19. 시행) * 기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6.1월)으로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이 5배 이내로 신설되었으나 실제 적용 저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 정비 추진 요구 <정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부정수급 제재부가금(1→5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1.1. 국민권익위원회) <정비내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와 다른 목적·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7.규제내용	기존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상당액까지 추가환수 하던 것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5년 이내 반복 위반시 5배, 목적외 사용시 2배 추가환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을 받은 자		
	9.기대효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간이형' RIA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추가환수) ① 법 제158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추가환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취소금액의 5배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취소금액의 2배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취소금액의 5배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8월, 기획재정부)과 공공재정 환수법**('20.1.1.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에 따라

- 부정수급자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1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5.18. 개정, '21.11.19. 시행)

* 기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월)으로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이 5배 이내로 신설되었으나 실제 적용 저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 정비 추진 요구 <정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부정수급 제재부가금(1→5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1.1. 국민권익위원회) <정비내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와 다른 목적·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거짓·부정, 반복위반)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받은 경우와 목적외 사용으로 5년 이내 반복 위반하는 경우 취소금액의 5배

⇒ (선택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준용 : 거짓·부정의 경우 5배 부과

○(목적외 사용) 임의매각·훼손·분실·국외이전 등 보조·지원 목적에 사용·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취소금액의 2배

⇒ (선택근거) 보조금법은 목적외 사용의 경우 3배 부과이나,

▲ 경미한 부주의에 의한 경우 추가징수금을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 법이 적용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3배 이상 추가환수하는 것은 과도하고 산재예방 목적달성에 지장이 우려되어 2배 추가환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8월, 기획재정부)과 공공재정환수법('20.1.1.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에 따른 개별법령 정비로 별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해당없음

3. 기대 효과

-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범 정부적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과 공공재정환수법 상 제재부가금 5배 이하 의무부과 적용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추가환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 고의성이 명확한 부정수급 제재기준 강화 및 목적외 사용 등 부정 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별표5>는 “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거짓·부정의 경우 5배, 목적외 사용 3배, 요건 미충족 1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부주의에 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⑤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 보조금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5>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보조금 수혜자의 선투자를 확인하고, 보조·지원하는 사업절차 상 특성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의 보조·지원이 나오기 어렵고, 신청 단계부터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재부가금 정보를 제공하여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방안

-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등에 대한 보조·지원임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명확한 거짓·부정한 경우 및 반복위반의 경우 외에는 2배 추가환수 규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운영 중인 제재부가금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되는 조직과 인력 소요가 없어 기존 재정으로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범 정부적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과 공공재정환수법 상 제재부가금 5배 이하 의무부과 적용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추가환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 후 부정수급 제재 강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제재부가금 범위 등 확대 필요성을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고의성이 명확한 부정수급 제재기준 강화 및 목적외 사용 등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 다만, 이 법이 적용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3배 이상 추가환수하는 것은 과도하고 산재예방 목적달성에 지장이 우려되어 2배 추가환수 적용이 타당함